

의안
번호

3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0. 18.

전문위원 강영숙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이용진 의원 외 13명

나. 의안번호 : 제346호

다. 제출일자 : 2024. 09. 30.

라. 회부일자 : 2024. 10. 15.

2. 제안이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의 내용, 예방 교육 규정(안 제4조~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규정(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1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제정안은 스토킹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 스토킹 범죄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기소인원 '22년 3,456명, '23년 4,819명, '24. 1~3월 1,481명 (24.5.12 법무부 보도자료)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주요내용

가.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나.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안 제5조(사업)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다음 각호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사업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6조(스토킹 예방 교육)

-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마.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 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바,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시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2023. 1.17제정(시행 2023. 7.18)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동 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됨.

불임 1 관련 법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4.20.제정(시행 2021.10.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1.17.제정(시행 2023.7.18)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